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부감사인에 의한 조합 회계감사 연례화〉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49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2. 1.
3. 회 부 일 : 2025.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지역축협 등의 자산·사업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의 감사를 받되, 자산 등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4년에 한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에서 매년 30건 이상의 횡령·배임·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 그 규모는 6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내부통제만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농업인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조합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 총액 기준을 3백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17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4년마다 받도록 한 것에서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년 받는 것으로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수감 의무 위반에 대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u>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u> 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u>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년</u> ----- ----- ----- ----- --.
② 제1항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 <u>기준에</u>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3조의2(과태료)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의2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500억원¹⁾)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²⁾(이하 ‘외부감사인’이라 함)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1)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현행법 제107조³⁾ 및 제112조⁴⁾는 각각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에 대해서도 동 조항(제65조의2)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임.

이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총 1,111개 조합 모두가 자산규모 총액 500억원 이상인 규모로 현행법에 따라 4년마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의 대상이 됨.

[외부회계감사 대상]

구분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합 계
전체 조합수*	916	116	79	1,111
전체 사무소 수	3,684	731	482	4,897
본 점	916	116	79	1,111
지 점	2,768	615	403	3,786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916	116	79	1,111
비율(%)	100%	100%	100%	100%

* 전체 조합수는 본점 기준

※ 자료: 농협중앙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횡령·배임 및 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매년 30건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2020년부터 202

3)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3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략>

4)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략>

4년까지) 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649억 9,3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이에 조합 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조합 차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음⁵⁾.

[최근 5년 조합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횡령·배임	건수	8	12	20	22	10	72
	금액(백만원)	548	10,314	11,061	1,884	2,039	25,846
부당대출	건수	5	9	1	3	3	21
	금액(백만원)	5,600	2,322	213	350	20,186	28,671
기타	건수	38	18	13	21	18	108
	금액(백만원)	4,245	1,239	387	3,739	865	10,475
합계	건수	51	39	34	46	31	201
	금액(백만원)	10,393	13,875	11,662	5,973	23,090	64,993

* 징계·변상 심의일 기준으로 작성됨

※ 자료: 농협중앙회

개정안은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의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먼저,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주기의 단축에 대해서는 ① 회계감사의

5) 2024년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24.10.18.) 시 임미애의원 지적: 농협의 지속적인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조합감사위원회 감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 지적.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24.10.24.) 시에는 4년 주기의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 제도 보완 필요성 제시

실효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조합 경영의 도모 및 ②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회계감사는 통상 전·당기 재무제표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행과 같이 4년 주기로 감사할 경우 전년도는 물론 지난 3개년 동안에 발생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의견제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로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어 건전한 조합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타 상호금융업권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주기가 1년 또는 2년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모두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300억원 또는 500억원)이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주기는 수협⁶⁾ 및 산림조합⁷⁾은 2년, 신협⁸⁾은 1년, 새마을금고⁹⁾는 1년에서 2년임.

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6조(회원 등에 대한 감사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69조(감독) ⑦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3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7) 「산림조합법」 제123조(감독)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500억원)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상호금융업권 외부 감사 현황]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법률 근거	농협법 제65조의1제1항 등	수협법 제169조제7항 등	산림조합법 제123조제4항 등	신협법 제47조제5항 등	새마을금고법 제76조제3항 등
외부감사 자산 요건	500억	300억	500억	300억	500억
도입시기	'04년	'04년	'04년	'98년	'99년
감사주기	4년	2년	2년	1년	2년(500~3,000억) 1년(3,000억)
감독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시·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상 관련 법령 내용 재구성

다만,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523호)」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회계감사 주기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1년 또는 2년)하여 단축하는 방향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였으므로,¹⁰⁾ 이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단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산림조합은 법령에서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합장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시행 중

- 8)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회계 및 결산) ⑤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3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4
- 9) 「**새마을금고법**」 제76조(외부 감사)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①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1.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제4항·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
 - ②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 10) 한편, 자산규모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함.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3.4.25.) 참조

다음으로, 과태료 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회계감사 의무의 이행력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그 타당성과 제재 수준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현행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은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해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신용협동조합법」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¹¹⁾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권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 조항이 도입된 이후 조합에서 회계감사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문 의 처
02)6788-5414

11)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제5항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